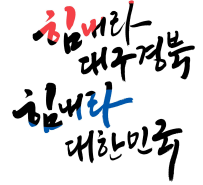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

2020.3.31.(화) 10시부터

배포

2020.3.31.(화)

| | | | |
|---------------------------------|---|-------|--|
| 책 임 자 | 금융위 은행과장 박민우(02-2100-2950) | 담 당 자 | 윤현철 사무관(02-2100-2951) 서지은 사무관(02-2100-2954) |
| | 금융위 보험과장 김동환(02-2100-2960) | | 김미정 사무관(02-2100-2961) |
| | 금융위 중소기업과장 홍성기(02-2100-2990) | | 권민영 사무관(02-2100-2991) |
| | 금감원 감독총괄국장 홍길(02-3145-8300) | | 윤덕진 부국장(02-3145-8001) |
| |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준수(02-3145-8020) | | 노영후 팀장(02-3145-8050) |
| |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강한구(02-3145-7460) | | 서영일 팀장(02-3145-7455) |
| |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서정호(02-3145-6770) | | 박종춘 팀장(02-3145-6772) |
| |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정용걸(02-3145-7550) | | 이호진 팀장(02-3145-7447) |
| |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한홍규(02-3145-8070) | | 박현섭 팀장(02-3145-8072) |
| | 은행연합회 본부장 김평섭(02-3705-5050) | | 이인균 부장(02-3705-5704) |
| | 생명보험협회 상무 신영선(02-2262-6621) | | 김인호 부장(02-2262-6645) |
| | 손해보험협회 상무 서영종(02-3702-8580) | | 권병근 부장(02-3702-8571) |
| | 여신금융협회 상무 이태운(02-2011-0710) 배종균(02-2011-0602) | | 김효석 부장(02-2011-0743) 이경원 부장(02-2011-0742) |
| | 저축은행중앙회 상무 최병주(02-397-8602) | | 성용욱 부장(02-397-8640) |
| |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황국현(02-2145-9006) | | 황길현 본부장(02-2145-9480) |
| | 농협중앙회 본부장 안호근(02-2080-5056) | | 김길수 부장(02-2080-3110) |
| | 수협중앙회 상무 강신숙(02-2240-2040) | | 민봉식 부장(02-2240-2200) |
| | 신협중앙회 이사 박영범(042-720-1211) | | 김일환 본부장(02-720-1300) |
| 산림조합중앙회 상무 조태원(02-3434-7123) | 오근영 부장(02-3434-7230) | | |

**제 목 :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동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1. 전 업권 공통 가이드라인

- **(지원 대상)** (i)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으로서, (ii)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i) 피해 확인 방법

-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
 - * 2019년 국세청 홈택스 자료 또는 기타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매출 기준 판단
-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 *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폭넓게 인정
-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 * 전 금융권 공동 양식 (☞별첨1)

(ii) 연체 및 휴업중인 차주중 지원대상 추가

- '20.1~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20.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자본잠식,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는 경우

□ (적용 대상 대출)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

* 단, 보증기관 동의 필요

- '20.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 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시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대출 >

- (i)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ii)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iii)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

* 구체적인 지원 제외 업종은 (별첨2) 참조

- 또한, 이자를 선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하거나, 대출기간 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상품특성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내용)**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

-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 포함
-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포함
-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다만,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상담

-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

- **(시행기간)** '20.4.1일 ~ '20.9.30일

2. 각 업권별 특성에 따른 추가 적용대상

- 상기 공통 기준에 추가하여 각 업권의 특성에 따른 적용대상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

* 보험계약대출 특성상 만기연장은 해당사항 없음

-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¹⁾, **신용**¹⁾, **담보**²⁾, **할부금융**³⁾, **리스**³⁾ 등은 포함되나,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⁴⁾은 제외

- 1) 가계대출의 경우 차주가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된 경우만 포함
- 2) 사업용 상용차 구입자금 대출 및 사업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을 포함
- 3) 취급당시 계약에 따라 대상물건의 반납 등이 예정되는 등 만기연장이 곤란한 리스·할부금융상품은 제외되며, 유동화를 위해 ABS에 편입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투자자 동의 및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지원여부 결정
- 4) 화물차 등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원대상

< 카드사·캐피탈사 등의 상품유형별 지원대상 포함여부 >

| 구 분 | 상품유형 | 포함여부 | 상품유형 | 포함여부 |
|----------------------|----------|------|----------|------|
| 중소기업대출 (개인사업자 포함) | 신용대출 | ○* | 보증부대출 | ○ |
| | 담보대출 | ○* | 렌탈 | × |
| | 리스 | △ | 할부금융 | △ |
| | (승용차 관련) | × | (승용차 관련) | × |
| | (승용차 이외) | ○ | (승용차 이외) | ○ |
| | 신용판매 | × | 현금서비스 | × |
| 가계대출 | 카드론 | △ | 신용대출 | △ |
| | (가계) | × | (가계) | × |
| | (개인사업자) | ○ | (개인사업자) | ○ |

* 승용차 관련 오토론은 제외

-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현재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 문의·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1332 → 6번 선택) 및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별첨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첨] 1. 코로나19 피해 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양식
2.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대상 제외 업종
3.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 연락처
4. 주요 Q&A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fsc@korea.kr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1**코로나19 피해 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양식**

1. 업체 개요

| | | | | | |
|-------------|--|------|--|-------------|--|
| 업체명 (상호) | | 대표자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

2. 경영애로 사항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에 체크, 중복 가능)

- 별도의 증빙 필요없이 신청자 본인 스스로 작성

| 구분 | 주요 사항 | 해당여부 (체크) | 비고 (세부사항 기입) |
|----------|-----------------------------|--------------|---|
| 1 | 매출액 감소 | | * 전년 대비 하락률 : 약 ____ % |
| 2 | 방문 고객수(거래 고객수) 감소 | | * 전년 대비 하락률 : 약 ____ % |
| 3 |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일 또는 영업 시간 축소 | | * 축소 일수 : 월 () 일 * 축소 시간 : 일 () 시간 |
| 4 |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자(종업원) 수 감원 | | * 2월 이후 감원 수 : ()명 |
| 5 |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부담 | | * 부담액 : 약 ()원 |
| 6 | 부득이한 휴점(학원, 교습소 등) | | * 휴점일자 : 2020. ____ . ____ . |
| 기타 사항 | (기타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술) | | |

- ①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금융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본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여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으며,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____ 월 ____ 일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회사명) 귀하

별첨2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 대상 제외업종*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과 동일

| 표준산업분류 | 업종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 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 표준산업분류 | 업종 |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별첨3

금융업권 지원센터 연락처

| 기관 | 전화번호 | 기관 | 전화번호 |
|--------------------------------------|----------------|------------|----------------|
| < 정책금융기관 > | | | |
| 산업은행 | ☎ 787-5612 | 수출입은행 | ☎ 3779-6114 |
| | ☎ 787-5615 | | ☎ 3779-6253 |
| 기업은행 | ☎ 1588-2588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1357 |
| 지역신용보증재단 | ☎ 1588-736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042-363-7130 |
| 서민금융진흥원 | ☎ 1397 | | |
| < 은행 > | | | |
| 국민 | ☎ 1588-9999 | 경남 | ☎ 1600-8585 |
| 신한 | ☎ 1577-8000 | 대구 | ☎ 1566-5050 |
| 우리 | ☎ 1588-5000 | 부산 | ☎ 1588-6200 |
| 하나 | ☎ 1588-1111 | 광주 | ☎ 1588-3388 |
| 농협 | ☎ 1661-3000 | 제주 | ☎ 1588-0079 |
| 수협 | ☎ 1588-1515 | 전북 | ☎ 1588-4477 |
| 씨티 | ☎ 1588-7000 | 은행연합회 | ☎ 3705-5000 |
| SC제일 | ☎ 1588-1599 | | |
| < 신용카드사 > | | | |
| 신한 | ☎ 1544-7000 | 하나 | ☎ 1800-1111 |
| KB국민 | ☎ 1588-1688 | 우리 | ☎ 1588-9955 |
| 삼성 | ☎ 1588-8700 | 롯데 | ☎ 1588-8100 |
| 현대 | ☎ 1577-6000 | 여신금융협회 | ☎ 2011-0700 |
| 비씨 | ☎ 1588-4000 | | |
| < 보험협회, 저축은행, 상호금융중앙회 > | | | |
| 생명보험협회 | ☎ 02-2262-6530 | 손해보험협회 | ☎ 02-3702-8572 |
| 저축은행중앙회 | ☎ 397-8600 | 새마을금고중앙회 | ☎ 1599-9000 |
| 농협중앙회 | ☎ 1661-2100 | 수협중앙회 | ☎ 02-2240-2217 |
| 신협중앙회 | ☎ 1644-6000 | 산림조합중앙회 | ☎ 02-3434-7232 |

Q1.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기 곤란한 차주 또는 개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간 매출 자료가 없는 차주는 만기연장·이자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업력 1년 미만 등의 사유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피해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
 - 금융회사는 동 확인서 검토를 통해 피해가 인정될 경우 만기 연장·이자유예를 시행

Q2.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상환유예가 안되는 것인지?

- 금번 대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에만 적용되며, 가계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상환 유예 여부는 차주가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상담 필요

Q3. 신청후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 통상 5영업일 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대출 등과 같이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선행되어야 하는 대출의 경우 추가기간 소요 가능
- 따라서 신청인께서는 상환기간 도래前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4. 이자상환 유예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는 감면되는지?

- 이자상환 유예는 이자 감면이 아님 → 차주는 유예기간 종료 후 금융회사에 유예된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유예된 이자를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음

Q5. 유예기간 만료 이후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은 차주가 선택할 수 있는지?

- 다수 금융회사는 차주가 일시 또는 분할상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6.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9월까지만 유예되는지?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이상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한바,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소 금년 12월까지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

Q7. 반드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야 하는지?

- 차주는 6개월보다 단축된 기간으로 유예 요청 가능
 - 다만, 금융회사는 차주의 별도 단축 요청이 없는 한,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부여

Q8.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도 상환 유예 가능한지?

- SPC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로서 실질적인 제조 또는 영업활동이 없고, 현실적 피해를 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는 무관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Q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리스상품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 리스·할부기간 종료 후 이용자의 대상물건 반납 등이 예정되어 물건의 잔존가치 하락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용리스*(일부 금융리스 포함) 및 잔가보장할부 상품**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운용리스) 리스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자가 기간 종료 후 해당 물건을 반납 (금융리스) 리스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자가 기간 종료 후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

** 만기시 이용자에게 반납권리를 부여한 할부금융상품으로 실질적으로 운용 리스와 유사

- 또한, 화물차 등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 관련 대출·할부금융·리스상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
- 유동화를 위해 ABS에 편입된 할부금융·리스상품 등은 투자자 동의 등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

Q10. 개인 명의의 카드론 및 신용대출도 포함되는지?

일반 개인이 사용한 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가계대출로서 금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를 이용한 사업자금 유통이 많아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되는 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유예대상에 포함됨

* 여전사가 취급하는 개인 명의의 신용대출로 한정

Q11. 겸영은행의 카드론도 포함되는지?

신용카드사와 동일하게 일반 개인이 사용한 카드론은 제외되나,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되는 카드론은 지원대상에 포함됨

Q12. 4.1일 이후 받은 신규대출도 상환유예가 가능한지?

금번 대책의 대상은 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되며, 4.1일 이후 발생한 신규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음

Q13.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해당 금융회사 대출만 연체가 없으면 상환유예가 가능한지?

다른 금융회사 대출 등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 금융권의 대출 연체를 해소하여야 함

Q14. 이미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차주의 경우도 이번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내용과 금번 지원방안을 비교하여 고객이 유리한 지원방안을 선택할 수 있음

Q15. 영위중인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데 전혀 상환 유예가 불가능한지?

- (별첨2) 지원제외 업종은 전 업권 공통 ‘가이드라인’ 으로서, 각 금융회사들은 (별첨2)를 참조하여 세부적인 제외 업종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 중이므로,
 -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는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에 문의·상담해 주시기 바람

Q16. 어떤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비대면 신청시 본인 확인 등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비대면 처리 확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 등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비대면 신청 가능여부*가 상이함을 양해바람

* 만기연장의 경우 상당수의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나,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만기연장 대비 내용이 복잡(유예기간, 분할상환 등)하여 비대면 처리가 어려운 상황

- 비대면 신청시 본인확인인 유선녹취 등을 통해 이루어짐